

2025년 J-curve 배치프로그램 3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[J-curve 배치프로그램 3기]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2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여 단기 집중육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역량있는 기업으로 육성

□ 주요내용

- 모집기간 : 2025. 2. 12.(수) ~ 2. 28.(금) 18:00까지
- 모집분야 : 아래 사항 중 선택

일반형	전 분야
특화형	컬처테크, 미디어테크, K-콘텐츠 등

- 모집대상
 - 예비창업자(팀) ~ 5년 이내 창업기업('20. 1. 1. 이후), 전북혁신센터 관리기업
- 선정규모 : 8개사 내외 ※선정기업수는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운영기간 : 2025년 2월 ~ 7월
- 지원내용
 - 기업진단 프로그램, 진단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교육·멘토링 지원
 - 투자자/심사역 1:1 매칭 지원, 직접 투자 검토 및 TIPS 연계 지원 등
 - 우수기업 증권형·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참가 지원
 - 우수기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(Start-up Foret) 입주공간 지원

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(신청대상과 사업장 소재지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)

○ 신청대상 *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

- 예비창업자(팀) ~ 5년 이내 창업기업('20. 1. 1. 이후), 전북혁신센터 관리기업

예비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 시 전북지역 內 사업장 주소지를 예정 중인 자 • 사업기간(25년 12월) 내 창업 필수 조건
5년 이내 창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북지역 內 사업장 주소지를 둔 기업
전북혁신센터 관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• 도외소재 기업 신청 가능 (단, 사업기간 내 전북이전 조건)

■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
구분	확인 서류 및 기준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
법인기업	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

■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○ 사업장 소재지 *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

①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기업

* 본사(타지), 지사(도내)인 경우,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
② 타 지역(전북 소재 외) 기업은 선정 후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의 도내 이전 예정 기업

□ 신청제외 기업

○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○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
○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
○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
○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

-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※[참고 2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Ⅲ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

- 전문가 심층 진단을 통한 기업 현황파악 및 성장전략 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진단 프로그램 지원
- 경영·투자·IR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창업교육 및 전담 멘토링 지원
- 네트워킹 운영(부트온 캠프, 연사 강연 등)
- 센터 운영사업 연계 지원(판로, 투자, 마케팅, R&D 사업 등)
-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투자자/심사역 간 1:1 매칭을 통한 단계별(교육→진단→컨설팅→고도화) 전문가 솔루션 제공

○ 투자 연계 지원

- 데모데이를 통한 IR피칭 기회 제공
- 데모데이 종합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Seed 투자 검토 및 TIPS 연계
- 센터 협력 투자사를 통한 유관기관 공동 협업 IR 등 운영
- 우수기업 리워드형·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참가 지원

○ 입주공간 지원

- 우수기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(Start-up Foret) 입주공간 지원

* 공고일 기준,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시 중기부 팁스(TIPS)도전시 가점 2점

※ 지원항목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

IV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. 2. 12.(수) ~ 2. 28.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(<http://event.jbci.or.kr>)
 - 사업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
 -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

< 온라인 신청절차 >

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→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→ ③ **J-curve 배치프로그램 '신청하기'** 선택 →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→ ⑤ **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** →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→ ⑦ '신청·접수확인' 메뉴 선택 →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→ ⑨ '접수현황확인'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신청(<https://event.jbci.or.kr/>)
-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 '온라인 신청 플랫폼' 추가접수 불가함

※ 접수결과 신청기업의 수가 미달될 경우, 접수기간 연장 및 추후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- 문의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팅팀 ☎ 063-220-8951, 8903
 - (이메일) 메일 문의시 noct@ccei.kr, khs19@ccei.kr 2개 주소로 발송 必

□ 제출 및 증빙서류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필수여부	비고	
1	■ 참가신청서	필수	-	
2	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	-	
구분	증빙서류	필수여부	비고	
1	■ 대표자 신분증	필수	-	
2	■ 개인		① 사업자등록증(계속 사업 모두) ② 사실증명(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) ③ 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	-
	■ 법인		① 사업자등록증(계속 사업 모두)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실증명(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) ④ 폐업사실증명(해당시)	
3	■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 증명서			-
4	■ 대면심사 시 발표자료(10분 정도 분량)			
5	■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	해당시	2024년	
6	■ 실적자료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	해당시	2024년	
7	■ 기타자료(지식재산권, 벤처기업확인서 등)	해당시	2024년	

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제출일까지 발급분만 인정
- 접수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서류심사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

○ 필수 서류 발급 관련

*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: (방문)세무서 또는 (인터넷)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*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처 : (방문)주민센터, (인터넷)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
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(홈택스)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기창업자 : 총사업자등록내역/예비창업자 : 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○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(해당시)

매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등
투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
고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기타자료	국내·외 지식재산권, 국제협약서, 벤처기업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

V

심사 및 추진일정

□ 심사방법 및 절차

< 자격요건 검토 및 심사 일정 >



- ① (요건검토)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② (서면심사)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심사 및 발표심사 대상자 확정
- ③ (대면심사) 기업 대표 및 팀원의 전문성, BM 타당성,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,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- ④ (최종선정) 발표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

※선정기업수는 심사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심사항목

심사항목	내 용	점수
경영	- 기업 대표 및 팀원의 전문성 - 추진역량 및 제품(서비스) 이해도 -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	40
기술	- 지식재산권 및 인증 확보 건수 - 보유 기술을 활용한 제품 구현계획 -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	30
사업화	- 시장분석 및 판매계획의 타당성 - 목표시장 진입 및 확장 가능성 -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	30
합계		100

※세부심사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추진절차 및 일정 ※ 추진일정은 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단 계	일 정	세부내용
모집공고 접수	'25. 2. 12.(수) ~ 2. 28.(금) (14일간)	- 신청서 접수(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)
적격 여부검토	~ '25. 3. 6.(목)	- 신청자격 검토 - 미비서류 검토
서류심사	'25. 3. 7.(금) 예정 ※ 변동될 수 있음	- 외부 전문가 서류심사
발표심사	'25. 3. 13.(목) ※ 변동될 수 있음	- 외부 전문가 발표심사
선정공고	'25. 3. 14.(금) ※ 변동될 수 있음	- 선정결과 및 추후일정 안내

VI 기타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시 마감시간(25. 2. 28.(금) 18:00)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심사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대면 심사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대면심사는 (예비)창업자 혹은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대면심사시 별도의 동의없이 녹음된 기록 자료는 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심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참고 1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	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동종유지	창업아님	
		동종의 신규 법인설립	창업	
		이종	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동종창업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	
		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	
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	창업아님		
조직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		
	이종	창업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 2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1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